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24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어기구 · 이개호 · 박희승

오세희 • 박지원 • 소병훈

임호선 · 송옥주 · 주철현

김재원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 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 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 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충해"를 "일조량(日照量) 부족·병충해"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일부와"를 "100분의 80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부를"을 "100분의 10 이상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	1					
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						
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u>병충</u>	<u>일조</u> 량					
<u>해</u> ・조수해(鳥獸害)・질병 또	(日照量) 부족·병충해					
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						
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						
해 • 질병 또는 화재(이하"어						
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②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					
	는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	제19조(재정지원) ①					
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u>일</u>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u>일</u>부를 추가로 <u>지원할 수</u> 있다.

② ~ ④ (생 략)

							100	분의		8
<u>0</u> 0	상	을	지	원항	여	야	하ㅁ	<u> </u>		
										-
					<u>1</u>	001	분의	10	(<u>)</u>
<u>상</u>	<u>을</u> _			<u>ス</u>	[원	하	卢야	한1	다.	•
2	\sim	4	(3	현 행	과	같	음)			